

## 인텔 이타늄칩 특허권 침해 판결

인텔이 대형 기업의 정보통신(IT) 시스템 시장을 노리며 7년간 개발, 올 여름 선보였던 이타늄(Itanium) 칩이 제조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로 인텔은 앞으로 칩 제조를 위해서 2억500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게 됐다.

미국 텍사스주 마샬 법원은 이타늄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텔이 컴퓨터 서비스 회사 인터그래프의 특허 기술 2개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인터그래프 측은 1억5000만 달러를 인텔 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으며, 여기에 1억 달러를 소송 비용 및 라이선스 비용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타늄 칩은 6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 32비트의 제온(Xeon)이나 팬티엄보다 더 빨리 정보를 처리해 일각에서 각광을 받았던 상품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 리나이 “롯데서 특허 도용” 롯데기공 “영업방해 술책”

리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가 롯데기공(대표 유정상)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실용신안권 침해중지가처분 신청과 의장권 침해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리나이는 지난달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 전 모델에 대해 침해중지 및 보일러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전시 등의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나이측의 소송대리인은 “리나이의 가스보일러 기술을 롯데기공이 무단 도용하는 실태가 만연해 있어 이번 제재 조치는 그 일환으로 취해졌다”

며 “롯데기공의 자발적 침해행위 포기의의사가 없는 한 30여 가지 특허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訴)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요 핵심 기술인 비례제어기술과 열교환기의 기본기술 등 30여 건의 특허기술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6개월 안에가처분 청구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돼 각개의 가처분 결정 때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조치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기공측은 이에 대해 리나이를 영업방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원 롯데기공 기획실장은 “보일러에 들어가는 일개 부품에 대한소송이며 보일러 성수기를 맞아 영업 방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의장권 등이 등록된 부품은 이미 공지화된 기술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일러업계는 최근 경동보일러와 리나이, 귀뚜라미보일러가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기공은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4개 업체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이저업체들의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매일경제

## 일본, ASML상대 “스테퍼.스캐너 특허 침해” 소송제기

웨이퍼 스테퍼 제조업체인 일본의 니콘이 일본과 한국에서 네덜란드 스테퍼업체인 ASML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

고 있다.

니콘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국제거래위원회(ITC)를 상대로 ASML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세미비즈니스에 따르면 니콘은 도쿄 지법에 지난 7일 ASML이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인 스테퍼와 스캐너에 대한 12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튿날인 8일에는 서울지법에 역시 ASML이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니콘은 ASML과 그 협력사들을 상대로 일본과 한국에서의 스테퍼 및 스캐너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신청한 상태이다.

니콘은 미국에서도 이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SML의 해당장비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탄원을 낸 바 있다.

니콘은 이날 소송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은 스테퍼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이라고 밝히고 ASML은 초미세회로를 찍기 위한 니콘의 핵심 노광장비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SML은 즉각 니콘의 특허는 유효하지 않으며 니콘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지난 4월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또 ASML은 니콘을 도쿄 지법에 웨이퍼 핸들러 기술 특허 도용으로 맞고 소한 상태이다. 현재 반도체 노광장비시장은 ASML과 니콘, 캐논이 빅3를 형성하고 있으며 3사간 다중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반도체 장비 수요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별도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는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 최종결과를 내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이동통신업계, 특허권 분쟁조짐...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동통신업계의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특허침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애드링시스템(대표 박원섭)은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차 경고장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애드링시스템은 지난 9월 SK텔레콤에 1차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애드링시스템은 또한 KTF와 LG텔레콤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KTF와 LG텔레콤의 통화 연결음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통화 연결음 서비스가 특허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원섭 사장은 SK텔레콤에 보낸 2차 경고장을 통해 "SK텔레콤이 1차 경고장에 대해 공식적인 회신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2차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특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해외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애드링시스템은 지난 99년 5월 출원해 2001년 10월에 등록하고 세계 31개국에 발명특허 개별국가 진입을 완료한 통신단말기 및 그것을 이용한 광고방법의 특허권을 문제삼고 있다.

이 특허는 통신기기의 벨 소리와 발신대기음(통화연결음)을 기존의 신호가 아닌 음성, 음향, 문자, 영상 등으로 바꾸어 휴대폰으로 방송식으로 직접 송출하거나 휴대폰에 다운로드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라고 애드링시스템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애드링시스템이 가지

고 있다는 특허권과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컬러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고장을 보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측은 “애드링시스템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결론이 난 만큼 경고장에 대해 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inews24

## 익스플로러 특허소송 위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력제품 중 하나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특허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사법부는 캘리포니아대학 등이 지난 1999년 제출한 익스플로러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줄기차게 소송 기각을 요구해왔던 MS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동안 특허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대학 측이 MS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당시 이 대학교수 출신인 마이클 도일이 창설한 에올라스테크놀러지는 “MS가 양방향 애플리케이션을 찾도록 해 주는 우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그 동안 “익스플로러의 작동 방식은 원고들의 주장과 다르다”며 소송기각을 요청해 왔다. MS 측은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news24

## 반도체 회로설계 솔루션 특허기술 도용” 케이던스-멘토 맞소송 제기

주요 반도체 설계 검증장비 공급업체인 케이던스와 멘토가 미국에서 서로 특허침해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 반도체회로설계솔루션(EDA)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전문 뉴스 서비스 사이트인 ‘세미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번주 케이던스가 앵틱스 및 앵틱스를 인수한 멘토를 상대로 기술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멘토 역시 케이던스를 상대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양사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케이던스와 멘토의 대립은 양사가 몇해 전 반도체 검증장비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각각 킷턴과 앵틱스를 인수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케이던스측은 앵틱스의 최고 기술책임자에 대해 기술 유출 및 도용혐의로 형사고발을 해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기술을 멘토가 100만달러에 사들이면서 케이던스는 기술의 주인이 된 멘토가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멘토도 케이던스가 인수한 킷턴의 회로검증장비인 머큐리 라인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법정소송에 대해 멘토와 케이던스의 국내 영업관계자들은 “검증장비가 워낙 고가인데다 불황으로 인해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업체들이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법정소송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귀뜸한다. 그러나 국내 업계 영향에 대해 이들은 “양사의 법정공방은 어디까지나 미국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국내에서는 판매 및 기술 지원과 관련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DA업계에서는 호황기에는 M&A가, 불황기에는 법정소송이 붓물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양사가 취급하는 제품들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도 한두대밖에 구매하지 않는 고가장비여서 요즘처럼 반도체 회사들이 비용 지출을 꺼리는 시기에는 EDA업체로서는 외부 영업보다는 기술 도용이나 특허침해를 꼬투리 삼아 손해배상을 받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저변에 팽배해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NHN-아하넷 특허분쟁 장기화 조짐

엔에이치엔(NHN-대표 이해진)의 아하넷(대표 강승일)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NHN과 아하넷은 각각 “상대방의 주장 일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적분쟁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HN는 “아하넷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의 핵심은 청구항 1항으로 이와 6개항은 종속항이며 이는 독립항인 1항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핵심인 1항 자체를 절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넷의 특허침해 주장자체를 일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쟁점인 청구항 1항은 ‘가입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생략)-설문작성-설문응답-설문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분석-데이터통합분석-데이터세일즈-지불로 구성된 일종의 통계분석 및 판매에 관한 비즈니스모델(BM)’.  
아하넷은 이 BM을 지난 2000년 7월3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리서치방법(026709)’으로 특허출원-등록했다.

아하넷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NHN의 ‘풀에버 서비스는 ‘가입자관리-설문작성-설문응답-설문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분석을 지난해 12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NHN측은 “데이터 통합분석과 데이터 세일즈 등은 없으며 지불시스템은 이전부터 채택,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BM 특허침해는 완전한 BM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부분의 도용 또는 도입은 침해가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아하넷측은 “NHN측의 데이터 통합 및 세일즈, 지불시스템을 포함한 BM 특허침해 사례가 분명히 있다”며 “이와 관련 십여개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관련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NHN의 침해 사례를 수집 중이나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당사의 기업전략상 사례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며 “NHN측이 승복하지 않고 본 소송에 들어갈 경우 관련사례를 일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이와 관련, 오는 8일 양자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 중 CDMA 독자추진 미 퀄컴과 특허권 시비

중국이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기술로 TD-SCDMA 방식을 추진하면서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퀄컴과 TD-SCDMA 진영 간에 특허권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통신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TD-SCDMA 기술의 상용화를 담당할 산업협력기관을 설립키로 공식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중국의 독자

CDMA기술의 추진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이동업계에서는 중국이 퀄컴과 계약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퀄컴은 이에 대해 “중국이 CDMA 원천기술 사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TD-SCDMA 장비업체’에 대해서도 기술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회사의 어윈 제이콥스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독일 지멘스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TD-SCDMA도 우리의 CDMA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만큼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CDMA 특허는 현재 세계 1억2700만개 이상의 휴대폰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회사는 측은 이를 통해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이동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로열티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확대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퀄컴의 단호한 주장에 대해 ‘TD-SCDMA를 공동개발한 중국 다탕과 독일 지멘스 등은 이 기술이 퀄컴의 특허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멘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TD-SCDMA기술이 퀄컴 특허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퀄컴 특허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탕측도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퀄컴의 기술적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한 만큼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의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다탕과 후하웨이 등 TD-SCDMA 장비업체

가 퀄컴에 로열티를 내지 않고 판매를 할 경우 퀄컴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퀄컴은 중국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바로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이스트만 코닥, 아그파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세계 최대의 사진 필름 업체인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은 경쟁업체인 벨기에의 아그파를 상대로 의학용 X-레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코닥 관계자는 “아그파가 제조한 의학용 X-레이 필름 중 일부가 우리의 T-그레인 사출 기술 등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그파를 상대로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아그파가 시간을 단축하며 이미 지 질을 높이는 현상기술과 가슴 X-레이용 필름에 사용되는 특수층 형성에 관한 특허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그파는 “우리는 확실한 기술적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그파의 디지털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용 사진을 찍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함으로써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영·한 산업재산권 용어



**waiver of a claim to priority**

우선권주장의 포기

**waiver of patent**

### 특허권 포기

특허권이 조기에 소멸되는 형태의 하나인 특허권의 포기는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권에 대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엔 특허청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warehousing**

### 웨어하우스

도메인네임과 관련해서는 도메인네임을 원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 등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WEB hosting**

### 웹호스팅

막대한 비용부담과 기술부담을 수반하는 웹서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weight(strenth)of evidence**

### 증거력

증거조사의 결과 법원이 입증의 객체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된 효과를 그 증거의 입장에서 보아 증거력이라고 한다.

**well-known mark**

### 주지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wetware**

### 웨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인간. 인간의 두뇌 또는 인적자본을 나타낸다. 하드웨어가 컴퓨터라면 웨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사람이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판례번호]민사(특허) 2001.10.12.  
대법원 2000다53342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PD1550】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나 언론을 통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위 제품의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윤영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레인보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9. 1. 선고 99나24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는 피고 이준호의 특허권(특허번호 제104660호)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고 이준호가 피고 주식회사 레인보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 중 원고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것 등까지는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그 침해물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효성생활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효성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효성산업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자동여과기까지 철거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위 피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자동여과기의 구성이 피고 이준호의 특허발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특허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 이준호가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만을 신뢰하여 특허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주의 깊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가 피고 이준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주심) 대법관 이규홍

### 【판례번호】민사(부정경쟁방지)

2001. 10. 12. 대법원 2001다44925

판결 가치분이의

#### 【판시사항】

【TD7048】 상품의 형태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TD7050】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TD7134】 채권자가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보고서나 제품의 설명 및 시연을 위한 자료들을 채무자 로얄퀵클럽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고서 및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영업비밀 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채권자, 상고인】 에이치엠아이 인더스트리즈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업

【채무자,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얄퀵클럽인터내

셔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을 담당변호사 홍지욱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3. 선고 99나47664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제1 내지 제3점, 제8점에 대하여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





편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한편 상품의 형태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참조). 원심은, 채권자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dust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채권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 주장의 판매실적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이 사건 진공청소기에 관한 판시와 같은 광고 및 판매시연, 예약을 받기 위한 통화와 실제구매실적, 채권자가 신청의 주식회사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채권자의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채

권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어떠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품 형태의 상품 표지 및 그 주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제4, 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로알퀸클럽이 채권자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후 일시적으로 채무자들의 사무실 입구에 "Majestic Filter Queen"이라는 채권자의 상표를 그대로 기재하고 채무자들의 사무실 옥외 건물에는 "머제스틱"이라는 신청인의 상표를 게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상징인 필터 콘(filter cone)을 의인화한 채권자의 캐릭터 등을 게재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 로알퀸클럽이 채권자와 판매대리점계약 종료 후에 판매하고 남은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재고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상품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인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

로 당사자가 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추가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보고서나 제품의 설명 및 시연을 위한 자료들을 채무자 로얄퀸클럽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고서 및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 알퀸클럽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전단, 카탈로그 및 제품사용설명서 등과 채무자 로얄퀸클럽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작한 광고전단 등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강국(주심)

발특2002/12

